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3) 상정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3)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배 효 원)

가. 제안이유

- 부천시 문화상의 문화예술부문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수상 부문과 수상인원을 변경하고,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 문화상의 문화예술부문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하도록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을 변경함.(안 제2조)
- 문화부문과 예술부문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시부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 동장으로 각각 정함.(안 제4조)

- 문화상 문화예술부문 선정 심의기준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정함.(안 제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정사유는? ○ 산업기술 부문이 문화상 분야로 적합한가? ○ 안 제4조 1항 수상후보자 자격 요건 중 본적의 표기를 등록기준지로 수정하여도 조례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부문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분리하기 위함. ○ 산업기술 분야의 문화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02호
의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안년월일 : 2009. 5. 13.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중 「본적」이란 용어는 2008. 1. 1자 호적법의 폐지로 본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는 「등록기준지」로 사용하고 있어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호적법 폐지에 따라 「본적이 관내인 자」를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로 수정함.
(안 제4조 제1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본적이 관내인 자’를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① - ----- <u>본적이 관내인 자</u> ---- ----- ② (생략)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① - ----- <u>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u> --- ----- ② (생략)

[수정안 포함]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1명
2. 문화부문 1명
3. 예술부문 1명
4. 교육부문 1명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1명
6. 체육부문 1명
7. 산업기술부문 1명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①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또는 관내의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부문: 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학술연구기관대표, 동장
2. 문화부문: 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시부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 동장
3. 예술부문: 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시부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 동장
4. 교육부문: 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사회교육단체대표, 동장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구청장,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 동장
6. 체육부문: 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

천시체육가맹단체회장, 생활체육단체대표, 동장

7. 산업기술부문: 구청장, 경인지방노동청부천시청장,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장, 부천상공회의소회장,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부천시지부장, 종업원 100명 이상 종사업체의 장, 노동조합의 대표, 동장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 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장

제7조(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수상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부문: 금속,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부천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

3. 예술부문: 문학, 공연, 음악, 미술,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4.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환경·복지,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6.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7. 산업기술부문: 생산과 건설의 현장에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남다른 공적을 쌓음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헌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진 또는 예우를 한다.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상수상자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직 업	
주 소		종사기관	
수공기간	년 월 ~ 년 월(년 월)	직 위	
공적요지 (50자 내외) :			
경력 및 활동사항 :			
과거포상 내역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직 위		
	성 명		관인
비 고	○ 공적사항 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포상 내용이 많은 지면을 차지할 때에는 이면 또는 별지에 기재할 것		

(현행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 [1982. 10. 20 조례 제553호]
- [1986. 08. 16 조례 제771호]
- [1986. 11. 14 조례 제783호]
- [1990. 05. 16 조례 제1045호]
- [1992. 06. 13 조례 제1188호]
- [1994. 07. 13 조례 제1289호]
- [1996. 07. 18 조례 제1424호]
- [1997. 08. 01 조례 제1524호]
- [2006. 01. 13 조례 제213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시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 1명
2. 문화예술부문 : 1명
3. 교육부문 : 1명
4.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 1명
5. 체육부문 : 1명
6. 산업기술부문 : 1명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의 추천) 수상대상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부문 : 부천시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기타 학술연구기관대표, 동장
2. 문화예술부문 : 부천시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지부장, 기타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 동장
3. 교육부문 : 부천시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기타 사회교육단체 대표, 동장
4.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 구청장,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 동장
5. 체육부문 : 부천시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부천시체육가맹단체회장, 생활체육단체대표, 동장
6. 산업기술부문 : 구청장,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농협중앙회부천지부장, 부천상공회의소회장,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부천지부장, 종업원 100인이상 종사업체의 장, 노동조합의 대표, 동장

제5조 (수상대상자) ①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의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 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7조 (수상자 선정) ①수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수상자는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당해 부문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환경·복지,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6. 산업기술부문 : 생산과 건설의 현장에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남다른 공적을 쌓음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영인이나 근로자

③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진 또는 예우를 한다.

제10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상수상자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2. 10. 2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3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1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1. 14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16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1992. 6. 3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3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1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